



김해시복지재단

## 협약서

김해시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(이하 복지관)과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(이하 보건의료센터)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“복지관”과 “보건의료센터”의 포괄적인 상호 협력관계 수립 및 업무추진을 통한 김해시 장애인의 통합건강보건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협약내용)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.

1. “복지관”은 “보건의료센터”에서 의뢰 받은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이 제한되는 장애인에 대해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2. “보건의료센터”는 “복지관”의 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요청 시 김해시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.
3. 기타 양 기관은 본 협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협력한다.
4.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중 의견 차이, 이해 상충 또는 분쟁이 발생할 시 양 기관은 협의 또는 절충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### 제3조 (협약의 효력)

1.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,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2.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,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위배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3. 본 협약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며, 협약당사자는 서명 날인하여 각각 원본 1부씩 보관한다.



김해시복지재단

제4조 (신의성실의 원칙)

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 
간밀히 협조한다.

제5조 (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)

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 
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 
본 조항의 의무는 협약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된다.

제6조 (기타사항)

기타 제휴사항의 추가·변경 및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이 협약을 근거로  
상호 협의 하에 시행할 수 있다.

2023. 3. 20.



관 장 조 재 판



경 상 남 도  
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

센터장 신 용 일